[양식 제3호]

	◆ 1 대한법률구조공단
40	◆ 시대한법률구조공단 ※
o: rk	The second
ş	
××	

	성	• 본	본계속사용신고서								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							
	(년		월	Ę	!)				, 니다		3 ¬ -	11 L	0.31.	((()) **	-1	
성본 계속 사용 -	성명	한:	글									く	र्ड	별		11남 22여		
								본 (한지	-)			주민등록번호			<u> </u>	_		
		한>	자									출생연월일						
	등록	록기준지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۶ Ş	네 대 및 관	주계	의		
			[인 자			년 5		월	일		지 원		1 2	협의)법원의 결정	성	
37]1	타사	항																
④ 진 고 인	부	-				① 또는			민등록번호 전 화			-				_		
								7]메일 등록번호		_						
	모					① 또는	거ㅁ		민년 전		<u>번</u> 호 화	-				_		
		-			(1) IT / 1			9		메일		+						
								주	민등록번호			-				_		
	성대	경				① 또는 서		녕	전,		화							
	자	 걸 [1]수	제기	자		(スト	<u> </u> ·결:	0	메일	1)		
<u> </u>			<u> </u>	명	'		V: 1	1.			주덕	민등	록반	호		_		

작성 방법

- ①란: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③란: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④란:성·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'영표(○)'로 표시한 후 기명 날인(또는 서명)합니다.

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
⑤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 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부서류

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

- 1. 성·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.
- 2. 성·본계속사용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서등본 1부.
- 3.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: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- ① 법원의 허가에 의한 성·본계속사용신고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 - ②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성·본계속사용신고를 하는 경우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 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)
- *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